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 6. 11.(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
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2015. 3. 5.)과 함께 이 조례의 근거인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고, 초등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2급 정교사)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의 초등교사자격 부여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를 폐지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부족한 초등교원의 충원을 위하여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조례의 근거규정이 이미 폐지되었고 향후 같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